

중국의 노인복지 관련법제

- 양로보험제도를 중심으로 -

I. 서

II. 도시 근로자 양로보험제도

1.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양로제도
2. 기관·사업기관의 기본양로보험제도
3. 도시 근로자 양로보험제도의 문제점

III. 도시 주민 양로보험제도

1. 도시 주민 양로보험제도의 현황
2. 도시 주민 양로보험제도의 개혁시범

IV. 농촌 양로보험제도

1. 농촌 양로보험제도의 현황
2. 농촌사회양로보험시범에 관한 지침

V. 결

이 선 화

(해외입법조사위원, 중국 연변대학교 법과대학)

[특 집]

2012년도 Global Legal Issue는 최근 사회적 의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공생발전'에 관한 다양한 국가의 법제를 주제별로 다룰 계획입니다. '공생발전'은 '자본의 책임'과 '상생번영'이 중시되는 시장경제모델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연재순서]

- 고용관계에서의 평등확립을 위한 법제
- 노인복지 관련법제
 - 독일, 프랑스, 중국
- 재창업, 재취업의 기회보장을 위한 법제
-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법제
-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법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도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법제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

I. 서

중국도 서서히 노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라 노령화가 기타 국가에 비하여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복지 관련 문제, 특히 양로보험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중국의 양로보험제도는 1950년대에 확립되었고 장기간의 시행을 거쳐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에서 양로보험은 노년보험 또는 연금보험이라고 하는데, 근로자가 노동계약 정년 연령에 도달하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노후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한 가지이다.¹⁾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5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고령·질병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사회구제 및 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킨다”고 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70조는 “국가는 사회보험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근로자가 고령·질병·산재·실업·출산 등 경우에 도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中华人民共和国老年权益保障法)” 제20조는 “국가는 양로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1조는 “노인의 양로금과 기타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제때에 규정된 액수의 양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현행 양로보험체계는 보험범위·보험수준·보험방식에 따라 크게 도시 근로자 양로보험, 도시 주민 양로보험 및 농촌 양로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II. 도시 근로자 양로보험제도

현재 중국의 근로자 기본양로보장제도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한 가지는 기관·사업기관(事業單位) 근로자에 대하여 실행하는 양로보험제도이고, 다른 한 가지는 기업 근로자에 대하여 실행하는 기본양로보험제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이하 “사회보험법”이라고 칭함)”에서는 사용자(用人單位)는 규정에 따라 본 직장의 근로자임금의 총액에 비례하여 기본 양로보험료

1) http://www.molss.gov.cn/gb/ywzn/2005-12/02/content_95209.htm. 2012년 3월 20일 검색.

를 납부하고 기본양로보험 공제기금에 가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의하여 본인 임금의 비례에 따라 기본 양로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가입하며 사용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분리하여 관리한다(사회보험법 제12조).

국유기업과 사업기관의 근로자가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정부에서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본양로보험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사회보험법 제13조). 이는 사회기본양로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 외에도 사회보험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다양한 도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경비지원을 하거나 세수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보험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처음으로 법문에 규정된 것이다(사회보험법 제5조).

1.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양로제도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양로제도는 국무원에서 공포한 “통일적인 기업근로자 기본양로보험제도의 확립에 관한 결정(关于建立统一的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制度的决定)”에 근거하여 확립된 것이고, 사회공제와 개인계좌가 결합된 보험금적립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사회공제부분의 보험료는 기업에서 부담하고, 그 최고액은 기업임금총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인계좌부분의 보험료는 개인이 본인임금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며, 나머지 부분은 기업 납부금으로 충당한다. 개인 납부금액이 높아질수록 기업이 납부하는 금액은 3%까지 낮아질 수 있다. 개인계좌의 불입액의 이자는 동 시기 은행예금금리에 따라 산정한다. 개인계좌 불입금은 근로자 양로보험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용도로 전용하지 못한다.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개인계좌도 함께 이전하며,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개인계좌 중 개인이 납부한 불입금은 상속인이 상속할 수 있다.

2. 기관·사업기관의 기본양로보험제도²⁾

중국의 기관·사업기관 직원들의 퇴직금은 국가재정에서 통일적으로 지급하는

2) 이하 “기관기본양로보험”이라고 한다.

것이였다. 1994년부터 중국은 이러한 국가재정 지원제도의 틀을 벗어나, 보험료의 납부와 양로보험금의 수령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관·사업단위의 기본양로보험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중앙정부의 인사부서에서 추진한 것이고 국가적 차원의 통일적인 제도가 없었다.

2008년 국무원에서는 “사업기관 근로자 양로보험제도 개혁시범방안(事业单位工作人员养老保险制度改革试点方案, 이하 “시범방안”이라 한다)”을 공포하여 몇 개 지역에서 시범을 하였으나 철저히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양로보험제도

기본양로보험비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사용자가 납부하는 기본양로보험료의 비례율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총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체적인 비례는 省(市)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퇴직인원이 비교적 많아 양로보험금의 지급부담이 비교적 클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지급하는 임금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보장부·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이 납부하는 기본양로보험료의 비율은 개인의 해당 임금의 8%이며, 사용자가 원천징수한다. 개인의 임금이 당지의 재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3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산정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당지 재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60%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지 재직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한다.

2) 기본양로금의 발급

본 시범방안이 실시된 후에 취직하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이 된 자에 대해서는 퇴직 후 매달 기본양로금을 지급한다. 기본양로금은 기초양로금과 개인계좌양로금으로 구성된다. 퇴직 시의 기초양로금의 기준은 당지 과년도 재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과 본인의 월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한다. 개인계좌양로금의 표준은 개인계좌잔액총수를 총 개월수로 나눈 액수이다. “총 개월수”는 본인 퇴직 시 城·鎮 인구평균예상수명·본인의 퇴직연령·이자 등 요소에 따라 확정한다.

본 시범방안 실시 전에 취직하고, 실시 후에 퇴직하였으며, 보험료 납부기간이 15년에 달한 자에 대해서는 기초양로금과 개인계좌양로금의 기초상에서 過渡性 양로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각 省(市) 인민정부가 확정하며, 노동보장부·재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시범방안 실시 후 퇴직연령에 도달하였고, 개인납부기간이 15년에 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기초양로금을 발급하지 않으며, 개인계좌의 저축금액을 일시불로 본인에게 지급하며 기초양로보험관계를 해지한다.

본 시범방안의 실시 전에 이미 퇴직한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국가에서 규정한 원래의 대우대로 기본양로금을 지급하며,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양로금 조정에 참여한다.

3) 직업연금제도

사업단위 근로자의 퇴직 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사업단위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초양로보험의 기초상에서 사업단위는 근로자의 직업연금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노동보장부가 재정부·인사부와 함께 정한다.

3. 도시 근로자 양로보험제도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근로자 양로보험제도는 “이원화”된 제도이다. 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업과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양로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 후에 보험료의 납부에 따라 양로금을 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관·사업기관의 양로금은 현재 국가재정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 이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도시 양로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신분에 따라 그 혜택이 결정된다. 공무원 및 사업기관의 근로자에게 국가재정예산으로 지급되는 양로금은 최후 1년 직장 임금의 85%이다. 이 외의 일반 기업근로자·자유직업자·도시의 개인공사업자 및 개인공사업자의 피고용자 등의 기본양로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 지역의 과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20~30% 및 개인계좌기금의 1/120로 구성된다. 이러한 이원화된 퇴직금지급 방식에 따라 양자의 양로금 차이가 3배 이상에 달하게 되었다.

2012년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관련 문제 인터넷조사에서 양로금 이원화제도 개혁이 10대 이슈에 포함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90% 이상의 네티즌들은 기업 근로자의 양로금을 증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5년부터 기업 근로자들의 양로금은 이미 7차례나 인상하였지만 동등 조건의 기관과 사업기관 근로자 퇴직금의 1/3에 불과하였으며, 여전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다. 물가의 상승률이 양로금의 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이유도 있었지만, 이보다도 더욱 주요한 이유는 기관과 사업

기관의 양로금이 기업 퇴직자들의 양로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 근로자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켰다.

중국에서는 2008년에 사업기관의 양로금개혁을 시작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는 사업기관의 양로금개혁에 매우 많은 이익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저해가 많기 때문이었다. 이 외에도 사업기관의 양로금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 사업기관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여 개혁을 진행하는 것도 관련 기득권자의 불만을 초래하였으며, 국가공무원의 양로금지급제도를 본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개혁추진의 걸림돌이 되었다.

Ⅲ. 도시 주민 양로보험제도

1. 도시 주민 양로보험제도의 현황

도시 주민 양로보험제도는 주로 개인공사업자·비정규직·농민 출신 노동자 및 외국인·화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제도이다. 그러나 이들의 보험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며, 그 지역적 차이도 매우 크다. 또한 양로보험기금의 가치보존 및 증식능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중국의 양로보험기금의 투자수익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8년까지 전국 각종 사회보험기금금액은 2.5만억 위안에 달하지만 양로보험기금 등의 연평균수익률은 2% 미만이다.³⁾ 그 외 도시 주민 양로보험기금의 수입 대비 지출이 많다. 통계숫자상으로는 수입과 지출이 거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수한 양로보험료에는 기업에서 납부한 10~25%의 사회공제양로금 및 개인이 납부한 8%의 개인계좌양로금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에서 개인계좌양로금은 퇴직 후에야 지출하는 것이므로 사회공제양로금으로만 총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하여 양로보험기금이 수입대비지출이 많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부족한 부분은 일단 개인계좌자금으로 충당하여 개인계좌는 현재 거의 비어 있는 상황이다.

2. 도시 주민 양로보험제도의 개혁시범

2011년 국무원에서 “도시 주민 사회양로보험시범에 관한 지침(国务院关于开展

3) http://www.chinajob.gov.cn/SocialSecurity/content/2008-11/11/content_478791.htm. 2012년 3월 15일 방문.

城镇居民社会养老保险试点的指导意见)”을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개인의 양로보험료 납부와 정부의 보조금지급 방식을 결부한 도시 주민 양로 보험제도는 사회공제와 개인계좌를 결합시키고, 사회구조·가정부양·사회 복지 등과 기타 사회보장정책과 조합하여 도시 주민의 노후기본생활을 보장한다. 도시 주민 양로보험제도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범하며, 시범지역과 범위는 농촌사회양로보험의 시범지역과 거의 일치하고, 2012년에 도시 주민 양로 보험제도를 전국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 도시 주민 중에서 본 양로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만 16세 이상(재학생 제외)이어야 하며 도시 근로자 양로보험의 가입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도시주민이어야 한다. 그들은 호적지에서 자의에 따라 도시의 양로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3) 도시 주민 양로보험기금은 주로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정부의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도시 주민 양로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규정한 납부기준은 매년 100위안, 200위안, 300위안, 400위안, 500위안, 600위안, 700위안, 800위안, 900위안, 1000위안 등 10개 등급으로 나뉜다. 각 지역에서는 현지 실정에 따라 납부 등급을 증설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자는 자주적으로 등급을 선택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도시주민의 수입증가 등 상황에 근거하여 납부등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정부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보험가입자에게 도시 주민 양로보험의 기초양로금을 전액 지급한다. 중앙재정은 중서부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초양로금기준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며 동부지역에 대해서는 50%만 지급한다.
 지방정부는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조금의 최저기준은 1인당 1년에 30위안이다. 그리고 상위 등급의 개인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가입자에게는 30위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각 지방정부가 현지 실정에 따라 결정한다. 그 외에 농촌의 중증장애인 등 개인보험료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일부분 비용을 대납하거나 최저기준의 양로보험료를 전부 대납할 수 있다.

4) 개인계좌의 개설

국가는 보험가입자에게 종신 사용할 수 있는 양로보험계좌를 개설해 준다.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지방정부가 지급한 보조금 및 기타 유형의 후원금 등은 모두 개인계좌에 입금된다. 개인계좌의 불입금에 관해서는 매년 중국인민은행에서 공포한 금융기관의 1년 정기예금금리를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5) 양로금의 구성과 종신지급방식

중앙정부가 확정한 기초양로금의 기준은 1인당 1년에 55위안이다. 지방정부는 그 지역의 실제 사정에 근거하여 기초양로금의 기준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장기간인 도시주민에 대하여는 기초양로금을 초과 지급할 수 있다. 그 초과부분은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개인계좌양로금의 매월 지급기준은 개인계좌의 불입금을 139로 나눈 것이다(이는 현행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및 농촌사회양로금 지급기준과 동일하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개인계좌에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한다.

6) 양로금 수령조건

도시주민 양로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만 60세가 되면 매달 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도시의 주민양로보험제도를 시행할 때 이미 만 60세이고 근로자 기본양로보험 대우 및 국가가 규정한 기타 양로대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매월 기초양로금을 수급할 수 있다. 양로금 수급나이까지 남은 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매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또 15년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다. 양로금 수급나이까지 남은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매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15년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7) 기금관리

건전한 재무회계제도를 수립한다. 도시 주민 양로보험기금은 사회보장기금 재정계좌에 포함시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며, 독립적으로 결제와 정산을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원금을 보장하고 가치를 증식시킨다. 시범단계에서는 도시의 주민 양로보험기금은 잠정적으로 현금 기관에서 관리하고, 시범지역의 확대와 더불어 점차

상급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여건이 허락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직접 성급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다.

IV. 농촌 양로보험제도

중국의 농촌인구는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중 60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75% 이상에 달한다.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1998년에 중국의 노인 비율은 7.4%에 달하였고, 이미 노령화시대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에서 주요한 양로문제가 농촌의 양로문제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1. 농촌 양로보험제도의 현황

농촌의 사회양로보험은 법률규정에 따라 농촌에서 양로보험료를 징수하여 농촌 사회양로보험기금을 조성하고 노인과 노동능력을 상실한 농촌의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어 그들의 기본생활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보험 방식이다.

1992년 중국 민정부는 “현급 농촌사회 양로보험기본방안(县级农村社会养老保险基本方案, 이하 “기본방안”이라 칭함)”을 공포하였고, 각급 지방정부는 현지 실정에 비추어 농촌의 사회양로보장에 관한 지방성 법규와 지방정부규장을 제정하였다. 다만 현재 중국의 실정에 비추어 볼 경우 농촌의 양로보장제도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

특히 전문적으로 농촌 양로보험제도를 규정한 법률이 없으며, 법규로서 민정부에서 공포한 “기본방안”과 농업부에서 공포한 “향진기업 근로자양로보험방법(乡镇企业职工养老保险办法)”이 있다. 이들은 모두 부서규장으로서 법률이나 행정법규보다 효력이 약하다. 각급 지방정부에서는 위의 부서규장에 근거하여 각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규를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관한 법규의 효력이 비교적 약하며, 또 법규의 적용에서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농민들이 양로보험제도를 신뢰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민정부에서 제정한 “기본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원칙적인 규정으로서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농촌 사회양로보험 법률관계에 관련된 여러 주체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기본방안”의 규정에 따르면 양로보험기금은 국가재정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구매하거나 은행에 저축하는 외에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금리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

러한 규정은 보험기금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으며, 보험기금의 자금운용을 제한한다. 그 외에 “기본방안”에서는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기구나 사법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할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2. 농촌사회양로보험시범에 관한 지침

2009년 국무원에서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시범에 관한 지침(关于开展新型农村社会养老保险试点的指导意见)”을 공포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양로보험료의 납부기준 및 양로보험금의 발급기준

농촌의 실제상황·해당지역의 경제발전 및 여러 방면의 상황을 결부하여 납부기준과 발급기준을 결정한다. 농촌 양로보험제도는 개인·집단·정부에서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하며, 정부가 주도하고 농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도를 형성하여 농민들의 참여율을 높인다. 중앙정부가 기본원칙과 정책을 정하고, 지방정부가 그 지역에 적합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한다.

2) 양로보험료의 납부

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는 개인이 비용을 납부하고 집단에서 보조해 주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사회공제와 개인계좌를 결합시키고 토지보장·사회구제 등 기타 여러 사회보장제도와 결합하여 농촌 노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2009년에 전국의 10% 縣市에서 시행하고, 장래에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여 2020년에 기본적으로 전국 농촌에서 시행하여 적령기 농민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3) 보험가입범위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는 만 16세 이상(재학생 제외)이어야 하며,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촌 주민이어야 한다. 그들은 호적지에서 자의적으로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 기금조성

농촌사회양로보험은 개인이 비용을 납부하고 집단에서 보조를 해 주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3가지 방식이 결합된 제도이다.

(1) 개인이 납부하는 비용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한 농촌주민은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준은 매년 100위안, 200위안, 300위안, 400위안, 500위안 등 5개 등급이 있으며, 각 지역에서는 현지 실정에 따라 납부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자주적으로 등급을 선택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농촌주민의 평균 순수입의 증가 등에 따라 납부등급을 적절히 조절한다.

(2) 집단 보조금

경제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집단은 보험에 가입한 집단구성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의 기준은 촌민회의에서 결정한다. 이 외에 국가에서는 기타 경제조직이나 사회공익조직의 후원을 격려한다.

(3) 정부 보조금

정부재정을 통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보험가입자에게 농촌사회보험기초양로금을 전액 지급한다. 중서부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초양로금 기준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며, 동부지역에 대해서는 50%만 지급한다.

지방정부에서는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조금의 최저기준은 1인당 1년에 30위안이다. 그리고 상위 등급의 기준에 따라 개인비용을 납부한 보험가입자에게는 30위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각 지방정부가 현지 사정에 따라 결정한다. 그 외에 농촌의 중증장애인 등 개인 비용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일부분 비용을 대납하거나 최저기준의 양로보험료를 전부 대납할 수 있다.

5) 개인계좌 개설

국가는 모든 신형 농촌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농민들을 위하여 양로보험개인계좌를 개설한다. 개인이 납부하는 비용, 집단보조금 및 기타 경제단체·사회공익단체·보험가입자에 대한 개인의 후원금, 지방정부에서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

조금은 모두 개인계좌에 입금한다. 개인계좌의 불입금에 관해서는 매년 중국인민은행에서 공포한 금융기관의 1년 정기예금이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6) 양로금대우

양로금은 기초양로금과 개인계좌양로금으로 구성되며 종신까지 지급한다.

중앙정부가确定的 기초양로금의 기준은 1인 매달 55위안이다. 지방정부는 그 지역의 실제 사정에 근거하여 기초양로금의 기준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이미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농촌 주민에 대하여는 기초양로금을 초과 지급할 수 있다. 그 초과 부분은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개인계좌양로금의 매월 지급기준은 개인계좌의 불입금을 139로 나눈 것이다(이는 현행 도시 근로자 기본양로금 개인계좌의 지급기준과 동일하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개인계좌에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에서 정부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한다.

7) 양로금 수령 조건

만 60세이고 도시 근로자 기본양로금대우를 받지 않는 농촌 호적의 노인은 매월 양로금을 수급할 수 있다.

농촌 사회양로보험금제도를 시행할 때에 이미 만 60세이고 도시 근로자 기본양로금대우를 받지 않는 노인은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이 매월 기초양로금을 수급할 수 있다. 그리고 양로금 수급나이까지 남은 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15년이 만기할 때까지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다. 양로금 수급나이까지 남은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는 매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를 15년 이상 납부해야 한다.

8) 기금관리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 재무회계제도를 제정하여 양로보험기금을 사회보장기금 재정특정계좌에 포함시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은 독립적으로 결제와 정산을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원금을 보장하고 가치를 증식시킨다. 시범단계에서는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은 잠정적으로 현금 기관에서 관리하고 시행지역의 확대와 더불어 점차 상급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여건이 허락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직접 성급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다.

9) 기금감독

각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에서는 신형 농촌사회양로보장기금에 대한 감독관리 의무를 철저히 하며, 농촌사회양로보장기금업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규장제도를 제정하고 정비해야 하며, 기금에 대한 회계감사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기금의 조성·이체·발급을 감독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의 조성과 지급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재정·감찰·감사부서는 각 부서의 직책에 따라 양로보험기금을 감독해야 한다.

10) 관련제도의 정비

기존의 개인이 양로보험료를 납부하는 농촌사회양로보험을 시행한 지역에서는 양로보험기금의 채권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와 모순을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기존의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하였고 만 60세 이상이며 이미 양로금을 수급한 보험가입자는 직접 농촌사회양로보험에서 지급하는 기초양로금을 수급할 수 있다. 이미 농촌양로보험에 가입하였고 만 60세 이하이며 양로금을 수급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는 농촌양로보험개인계좌의 자금을 신 농촌사회양로보험개인계좌에 이체해야 하며 신형 농촌사회보험의 납부기준에 따라 계속 납부해야 하며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면 해당 대우를 받을 수 있다.

V. 결

중국의 양로보험제도는 장기간의 발전과정을 거쳤지만 현재까지 미흡한 점이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되어 있다. 이는 중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특히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구조 및 이에 따른 이원화된 양로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이다. 경제발전의 수요 및 급속히 진행되는 노령화에 따라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개혁은 절박한 상황이다. 2009년부터 제정되어 온 여러 법률과 정책은 기존에 존재하던 많은 문제들을 해소하였고, 특히 2011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은 금후의 양로보험제도의 개혁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험법”에 규정된 내용은 원칙적인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활용성이 떨어지므로 장래에 관련 세칙 등이 제정되어 이를 더 구체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